



미성년 '잊혀질 권리'가 알려주는 정보사회의 속성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있는 자신의 사진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예정이다. 정부 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7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2024년까지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과 가족 또는 제3자가 소셜 미디어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 등 개인정보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들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4년 유럽연합 '잊혀질 권리' 도입 이후

2014년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 판결이 내려진 이후,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삭제 권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지만, 당시 판결의 대상과 영역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2014년 판결에서 대상이 된 정보는 오래된 신문(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유서깊은

일간지 <라 방과르디아>에 실린 개인의 사회보험료 연체내역이다. 이 판결은 시간이 지나 부적절해진 개인의 금융정보가 검색엔진에서 계속 노출되는 현상에 대해서 개인의 삭제 요청권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삭제 대상도 인터넷에 존재하는 과거 신문 기사 자체가 아니라, 검색엔진에서 특정한 조건(사람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페이지에 한정됐다.

구글 등 정보기술업체는 당시 판결과 '잊혀질 권리' 제도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인터넷 통신규약인 TCP/IP를 개발한 인터넷 설립자 중 1명이자 구글의 인터넷 에반젤리스트인 빈트 서프(Vint Cerf)는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는 달성될 수 없다”며 도입에 반대했다.¹⁾ 인터넷에서는 정보를 내려받고 공유하는 과정이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정보가 일단 공표되어 다른 사람의 수중에 넘어가버리면 삭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색기업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는 유럽연합을 넘어 국내 등 여러 나라에서 인정되어 법제화하는 추세다. 부적절해진 정보가 인터넷에서 지속 유통되어 피해가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주로 삭제와 블라인드 요청권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인터넷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피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소셜미디어의 자녀 사진 '셰어런팅' 빛과 그늘

미성년자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권 도입 또한 인터넷 상에서 생겨난 새로운 피해 확산이 배경이다. 소셜미디어에는 아기의 천진난만함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parenting)'이 넘친다. 영국의 일간신문 <가디언>이 2013년 5월 소셜미디어 공간에 노출되는 디지털 발자국(Digital Footprint)으로 인해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에서 '셰어런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²⁾ 인터넷에 일단 노출된 글과 사진은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부모들이 올린 이미지가 나쁜 의도로 이용되거나 도용되는 등 나중에 사진의 당사자인 아이들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소셜미디어에는 프로필을 아예 자녀 사진으로 삼은 부모도 적지 않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자녀의 귀여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터넷이 없던 시기에 자녀 사진을 갖고 다니며 주변에 보여주는 일을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소셜미디

1) Matt Warman (2012. 3. 29). Vint Cerf attacks European internet policy. <The Telegraph>. URL: <http://www.telegraph.co.uk/technology/news/9173449/Vint-Cerf-attacks-European-internet-policy.html>

2) Nione Meakin (2013. 5. 18). The pros and cons of 'sharenting'. <The Guardian>. URL: <https://www.theguardian.com/lifeandstyle/2013/may/18/pros-cons-of-sharenting>

어로 자녀 사진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일은 지극히 위험한 일로 바뀌었다. 인터넷의 속성상 웹에 일단 게시되면 빈프 서프의 말대로 누구든지 해당 이미지와 텍스트를 내려받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를 찾아야 하는 검색엔진 이용자로서는 인터넷에서는 한번 게시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편리하다. 하지만 바로 그 특성이 누군가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경우엔 그 주인을 위협하는 환경이 된다. 더욱이 그 개인이 주체적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나 아동인 경우에 피해는 중대하다. 부모가 올린 셰어런팅 사진은 얼굴 주인인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사진이 도용돼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개인간 거래가 자유로운 인터넷 상거래에서 일부 사기꾼들은 다른 사람의 자녀 사진을 도용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프로필로 삼아 아이 부모로 상대를 오인하게 만들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이 드물지 않다.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한 유괴 범죄는 블로그에 공개된 아기 실명과 사진이 계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이 사건이 알려지며 육아 블로거들이 블로그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아기 이름을 별칭으로 바꾸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국내서도 2021년 10월 한 범죄자가 소셜미디어에서 접한 정보를 활용해 9살 여아에게 접근해 유괴했다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다.³⁾ 다국적 금융사 바클리스는 “2030년이면 신원 도용범죄 가운데 3분의 2가 셰어런팅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⁴⁾

일부 국가에서는 셰어런팅이 불러올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6년 캐나다 퀘벡리에 사는 당시 13살 소년 대런 랜들이 부모를 상대로 합의금 수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다. 부모가 자기 얼굴에 초콜릿을 묻히고 사진을 찍는 등 아기 시절 ‘굴욕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10년 넘게 공유해왔다고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당했다는 게 이유다. 소년은 “사진을 과도하게 공유하는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언론에 밝혔다.

독일 아동법은 신생아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부모가 동의하고 결정한 일이어도 나중에 아이가 커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아동 인격권 침해로 간주한다. 프랑스에선 동의 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배포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최대 4만 5,000 유로(약 5,900만 원)의 벌금과 1년 징역형에 처하는데 부모가 자녀의 유아 시절 사

3) 현화영 (2021. 10. 27). SNS로 1년간 '중2 언니' 가장해 9세 여아 납치하려던 20대남 송치. <세계일보>. URL: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027505485>

4) 문희철 (2022. 7. 8). 9세 여아 노린 그놈, 부모가 SNS 올린 사진 보고 범행 쫓다. <중앙일보>.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5336#home>



진을 올리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니세프 노르웨이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부모들의 자녀 사진 공유를 중단하자는 캠페인(‘Stop Sharenting’)을 벌였다.

지워지지 않는 미성년 시절의 과거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익명의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위험한 일이지만, 인터넷이 생겨난 이후 그 위험은 증폭됐다. 위험은 커졌지만 그에 대한 효과있는 대응책은 매우 부족하다. 인터넷이 없던 시기엔 정보의 유통도 제한적이었고 통제도 어렵지 않았다. 그 시절엔 전화국이 배포하는 인명 전화번호부에 전화가입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실려 있었고 각급 학교 졸업앨범에 전체 학생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와 연락처 등이 실려 있었다. 당시 환경에서는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가 발생하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노력으로 그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후의 세상은 일단 정보가 공개되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 피해와 대책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이 인터넷이 생기기 전과 생겨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려주는 대조적 사례가 있다.

1979년 4월, 부산의 초등학교 4학년 정효주양이 아침 등굣길에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납치범은 부모에게 딸의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보내고,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유괴범을 상대로 “효주양을 돌려보내면 선처하겠다”며 긴급 담화까지 발표했을 정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었다. 유괴범을 대상으로 대통령 긴급 담화까지 발표된 배경은 초등학생이 1년 동안 두 번이나 인질범에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효주양은 1년 전 1차 유괴범에게 납치되었다가 부모 품으로 생환한 지 178일 만에 2차 유괴범에 의해 또다시 납치됐다. 2차 납치범이 정효주양을 다시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1차 구출 뒤, 언론을 통해 신상 정보와 사진이 공개된 탓이었다. 정효주양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산의 부유한 기업가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비롯해 학교와 사는 곳이 알려졌다. 다행히 효주양은 2차 납치에서 다시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구출된 효주양이 돌아온 뒤 제일 먼저 한 일은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다. 이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기엔 이름과 사는 곳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몸을 숨기고 신변을 보호할 수 있었다.

인터넷 이후엔 완전히 달라졌다. 2014년 개봉된 영화 <한공주>는 2004년 밀양의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독립영화다. 성폭행 사건 뒤 피해 여학생은 고통과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름을 ‘한공주로 바꾸고,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다. 전학 간 학교에서 아카펠라 동아리에 들어가고 새 친구도 사귀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친구가 공주의 노래하는 동영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해당 동영상이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알려진다. 한공주는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했던 가해자 집단을 다시 마주하며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든다. <한공주>의 공주처럼 자발적으로 나를 공유하지 않아도, 타인에 의

해 나의 정보가 노출되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나의 흔적을 지우기 어렵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2010년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앞으로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는 순간 자신의 ‘디지털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두 이름을 바꿔야 할지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점점 더 연결되고 검색이 편리해진 인터넷 세상에서는 아이와 청소년 시기의 이름을 나중에 바꾼다 한들,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현실이다.

‘정효주양 납치사건’ vs ‘한공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성인과 달리 아동 등 미성년자는 성장이 이뤄지는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모와 사회의 보호대상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는 정체성과 인격 등이 형성되는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잘못과 행동에 대해서도 성인처럼 행위자 본인에게 직접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각국의 소년법과 청소년 관련법제에 명문화되어 있다. 판단과 책임의식이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기를 거치며 각자가 형성하게 되는 개인으로서 정체성은 고정적이거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성장과정에서 계속 변화하고 발달하는 특성을 지닌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미성년자의 언론 노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프랑스 방송은 미성년자의 철저한 보호가 중요한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얼굴과 신원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다. 부모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는 인터뷰의 경우에도 신원이 밝혀져 주변에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등 기술적 장치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한다. 또한 미성년 범죄자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⁵⁾ 일단 언론에 노출되면 ‘정효주양 납치사건’처럼 누군가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과 관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일부 국가에서 법률과 자율규제, 관행을 통해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언론 노출을 막아왔지만 인터넷 환경에서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환경은 기존의 청소년 보호 법제와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기존에 기능하던 미디어에서의 청소년 보호는 두 측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하나는 보호자인 부모 자신에 의해서, 다른 하나는 보호대상인

5) 최지선 (2014. 5). 프랑스-미성년자 인터뷰 땀 부모 서면동의 필수. <신문과 방송> No.521.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아동과 청소년들에 의해서다. 첫째는 셰어런팅의 부작용에서 드러나듯, 부모들이 자녀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해 자녀를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아동과 청소년들 또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게 기본적 환경이 되고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에 관한 정보와 이미지를 공유하는 문화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과 청소년은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지만 온라인 상에 공개된 개인정보가 미래에 끼칠 영향과 위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인지하기 어렵다.

청소년은 보호대상이자 정보주체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막기 어려운 주요한 배경은 미성년자들이 과거와 달리 부모와 교사의 통제 아래 있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성년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표현에 걸맞게 소셜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소통하는 세대다. 사이버 공간은 과거 학교나 술집, 공연장과 같은 현실의 물리적 공간과 달리 미성년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과 소셜미디어는 일상 생활의 마당이자 또래집단과 교류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필수적 공간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보호와 지도 아래 성장 과정에 있는 세대이지만 동시에 사이버 공간과 소셜미디어의 적극적인 이용자라는 점은 온라인 환경에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다. 온라인이 존재하지 않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디지털과 온라인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미성년자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권리 개념은 초기에 사적 영역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침입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의 프라이버시권에서 출발했지만, 오늘날에는 훨씬 광범위한 차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개인정보 주체가 자기정보를 통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누군가와 결정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소통과 오락, 정보 교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 세대는 수동적 이용자를 넘어서 온라인 공간에서 각자 자신들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존재이다.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불가분 혼합되고 뒤섞인 현실에서는 18살 선거권 부여처럼, 특정한 기준선을 만들어 허용과 금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동시에 스스로 온라인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정보 주체인 까닭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의 입법 과제

소셜미디어 상에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그들이 정보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이 문제에 대한 효율적 해결이 어려운 까닭은 정보사회의 기본적 속성에 기인한다. 디지털과 온라인은 생겨난 지 오래 되지 않은 기술과 사회 현상으로, 주된 특징이 환경과 작동방법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법제와 관행이 어느 정도 정형적이고 변화가 지극히 빠르지 않았던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했다면, 오늘날 직면한 디지털 온라인 사회는 지속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이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세상의 변화 폭과 속도는 확대되고 가속화하고 미래세대는 법률을 만드는 기성세대보다 빠르고 새로운 환경을 이용하고 적응한다. 미성년자에게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삭제 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한 정책은 향후 온라인 관련 정책과 법률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해 끊임없이 제·개정되어야 하는 복잡한 과제라는 것을 일깨운다. 📌